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0조의3 제1항에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 규정 마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정의 규정 구체화
(안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정밀심사결과 「장애 정도판정기준」에서 규정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의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 ----- ----- ----- ----- ----. 1. ----- ----- ----- 가.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정밀심사결과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규정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의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나. ~ 라. (생 략) 2. · 3. (생 략) ② (생 략)	<u>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u> <u>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u> <u>는 사람</u>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287